

## 장애인복지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

### Research on Personal Information Safety Condition and Improvements in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김성진\*, 권재숙\*\*

완주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평가사\*\*

Sung-Jin Kim(thomas3439@naver.com)\*, Jae-Sook Kweon(jskm2000@hanmail.net)\*\*

#### 요약

장애인복지관에는 정부의 정보화 촉진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업무표준화를 시작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과 사용자 편의 추구에만 치중되었을 뿐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와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업무 전산시스템의 활용현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법적인 근거를 확인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대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교육과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를 반영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업무전산시스템과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는 발생 이후 사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 기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심어 : 장애인복지관 전산시스템 | 개인정보보호 | 정보화 |

#### Abstract

In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under the Government's information acceleration plan, the computer system has been developed starting from work standardization in 2001 but it has been emphasized only on the technical and customer convenience side leaving out preparation for the side effects of them.

Therefore this article will seek the necess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basis in the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Additionally after analyzing current status for the personal security of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establishing an alternative plan for personal security policy's way could be addressed.

Increasing education for awareness stres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preparing institutional protection apparatus from applying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would be an alternative pla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Also frequent monitoring of accessing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computerized system should be achieved. It is impossible to recover damage caused by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although post actions are progressed. From this essay,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newly revised for both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nd the Disabled welfare center, and also technical, institutional strategy's action should be arranged.

■ keyword : | Computer System of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 Personal Security | Information |

## I. 서론

지식은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비슷한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고, 정보는 특정 사람, 특정 경우에만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서 자료는 그대로 특정 상황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정보는 대개 자료를 처리하여 얻어진다. 자료 처리란 자료의 내용 중 특정 상황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인식하고, 평가하거나 발췌하는 행동이며, 정보는 어떤 목적이나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 자료들 속에서 관련되거나 필요한 부분을 선택·분석·평가하고 옮겨서 만든 자료로서 정보의 원료이고 정보는 자료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21]. 이처럼 자료는 정보를 형성하고 정보는 지식을 창출해 낸다. 결국 일련의 자료는 전산화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것들이 조합되어 정보가 형성되고 하나의 지식과 새로운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재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전산화는 자료의 축적뿐만 아니라 지식 창출을 위한 출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관은 1982년 서울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된 이후 2009년 10월까지 총159개소가 설립되어 규모면에서 전국단위 종합적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종류에 따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며, 역할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와 <별표 4>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정의 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개설로 장애인복지 제도 도입, 복지기반과 전문적인 서비스 시작이 본격화되었으며 장애인복지 인프라·지역사회 복지 구축 등이 발전하였다. 또한 지역 장애인에게 진단·판정은 물론 직접·간접적 서비스와 지지·옹호를 받을 수 있는 ONE STOP 서비스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모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형태로 오히려 일본, 독일, 미국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관계자의 관

심과 부러움을 사고 있다[27].

장애인복지관의 전산화 사업은 복지 분야의 정보화 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복지 분야의 정보화 사업은 1990년대부터 추진되었다. 이중 장애인복지관은 2001년 업무 표준화를 시작으로 전산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2004년 10월 93개소 장애인복지관에 전산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2005년부터 2차 업무 표준화가 시작되어 2006년도에 추가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0년 하반기에는 대폭적인 3차 기능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련의 전산화 사업으로 과거 문서 중심의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활발한 전산화 사업 추진과 달리 개인정보보호 등 전산화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문제는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어졌다. 최성모(1998)는 전산화가 가지는 이중적인 성격, 즉 복지증진을 통한 고객지향성의 증진과 개인정보 통제에 문제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기관은 얻어진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와 통제에 성격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적 부문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방어와 규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화에 따른 이중적 성격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지 분야에서는 정보화와 관련된 연구[1][9][19]만 존재할 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법·제도 분야의 연구[5][6][4][11][17][24][25]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어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주로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측면 연구[3][15][18]가 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한 형태로는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김혜경(2007)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자체 점검 조사표와 언론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그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 행정기관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방향을 제시하였다. 진승아(2009)

는 교육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안 위협 요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교사와 학생의 인식 실태를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응방안으로 정보통신 윤리 교육 강화,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강화, 시스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기타 교육분야 연구는 학생의 인식에 대한 연구 [14][16][23]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김태현(2006), 신영진(2007), 신영진(2009), 박균성, 박월일(2001)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들은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방향 등 정책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신영진(2007)은 생애주기별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안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복지 분야의 개인정보 연구가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근거와 개념정의를 도출하였으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이 창조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살펴본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업무전산화 과정과 활용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셋째,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 II. 개인정보보호 법률 현황

### 1.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명확한 내용은 없으며 다만 제8조(차별금지 등) ②항에서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개인정보가 오남용이 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현행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은 [표 1]과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어 공·사간에 그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를 달리하고 있다[26].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와 연관성을 갖는 법과 규제 요건은 굉장히 다양한 법률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어 공공 및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표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적용분야	법률명	비고
공공부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994년 제정 1999년 개정
민간 부문	온라인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전문개정 2002년 개정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분야 (개별법)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국제기 본법, 통신비밀보호법, 보건의료 기본법, 범죄신고자보호법, 금융 실명법, 형법 등	개별 분야별로 업 무상 비밀보호 및 정보보호규정 산 재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은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할 수 있으며,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기초는 OECD 위원회가 1980년 9월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

가 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Information)”과 개인정보보호 8원칙 등이 기반이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안에서 정의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령 장애인복지관에서 유출된 이용자의 이름만으로도 기관 이용여부와 결합되어 장애인으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개인정보는 고정,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함께 생성·변화·확대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형은 [표 2]와 같다.

표 2. 개인정보 유형

정 보	세 부 내 용
속성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혈액형, 신장, 체중, 사진, 지문, 장애, 기타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고 특성을 규정하는 정보</li> </ul>
활동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출신 및 생활환경</li> <li>○ 학력 및 교육</li> <li>○ 재산·신용·납세</li> <li>○ 사회보장 및 행정서비스</li> <li>○ 기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li> </ul>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안 제2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안 제9조 내지 제10조)하여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신중성·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서는 단계별 보호기준을 규정(안 제15조 내지 제20조)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는 별도의 동의나 법령에 의한 예외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안 제23조)하고 있어 무분별한 고유식별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도를 도입(안 제30조)하여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목적, 근거 등 일정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개인파일 관리에 대한 수정 보완이 불가피 하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를 도입(안 제31조)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거나 사후 권리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안 제32조)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및 그 제한 사유와 권리회생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제33조 내지 제36조)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안 제37조 내지 제46조)하여 분쟁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조정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법의 엄격성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어 파급 효과를 클 것으로 보인다.

### III. 장애인복지관 업무 전산화

#### 1. 업무전산시스템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업무는 수기 방식으로 기록, 관리되어 자료 활용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는 재활서비스의 방향 수립과 제공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사업별 담당자 중심의 개별적 관리는 통합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에 한계를 갖을 수밖에 없으며, 복지관내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재활서비스, 행정, 회계 등 기본 업무가 통일되지 않아 관리상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업무 표준화

연구를 시작으로 전산시스템 개발과 전산 인프라 구축, 전산시스템 활용교육 및 보급 단계를 거쳐 추진되었다. 1차 업무전산시스템 구축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업무표준화와 업무전산시스템 개발과 인프라 구축간의 시간 장기화로 결국 장애인복지관의 업무방식과 불일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복지관 직원의 다양한 요구 반영,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편,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2차 업무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이 2006년부터 진행되어 2009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일선 복지관의 행정과 재활서비스에 있어서 실질적 사용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물리적 측면의 보안(VPN)장비 설치에 머물렀다.

표 3. 장애인복지관 업무 전산화 추진 일정

년도	구분	내용
2001 ~ 2002	업무표준화	업무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업무영역별 업무표준화 안 마련
2002 ~ 2003.10	업무전산 프로그램개발	업무표준화안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업무전산프로그램 개발 (복지관 실무전문가 46명 투입)
	Web 통합 네트워크시스템	장애인복지관 사업실적 등 각종 종합 단위별 분석 현황프로그램(Web 기반) 개발
2003.10	전산인프라구축 (16개소)	업무전산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위한 주전산기(서버), 네트워크장비공사 보급
2004.10	전산인프라 구축 (93개소)	업무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서버), 네트워크장비/공사 보급
2005	업무전산활용교육	집체교육 및 복지관 방문교육
2006	2차 업무표준화	장애인복지관 업무전산시스템 2차 업무표준화에 의한 개발 연구 실시
2008. 3 ~ 2009. 2	2차 정보화 기능개선 (134개소)	직업재활 서비스 영역 개편, 복식부기 회계 기능 추가 (VPN) 장비 설치 : Firewall, IPS, IDS, QoS 가능

장애인복지관 업무전산시스템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웹 방식이 아닌 개별 CS(Client & Server)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각 복지관에 개별적으로 소형 서버를 구축하여 모든 데이터가 이 서버에 집적되는 방식으로 관리는 개별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업무전산 시스템은 직원별 개별 아이디를 부여하고 프로그램 영역과 내용별로 권한을 설정하여 내부 보안을 유지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에 따른 로그(log)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은 보완에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업무전산시스템은 2개 영역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업무전산시스템 구성

영역	항목
행정관리	수납, 회계, 인사, 급여, 자산, 문서
사업관리	상담관리, 접수진단, 재활서비스, 지역복지1(재가, 자원봉사), 지역복지2(후원), 연구개발, 별도사업, 실적관리

#### IV. 장애인복지관 개인정보보호 실태 분석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는 자기 기업식 설문조사 방식 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정보보호 실태조사, 김혜경(2007)의 연구를 참조하여 장애인복지관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제작하였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설문지 구성 내용

구분	조사내용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지침, PC사용자를 위한 정보보호 이용수칙
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직원 수, 업무전산 사용자 수, 전산담당자 수, 정보보호 전담 직원 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한 전담 인력 운영, 정보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교육 분야, 교육방법, 교육 필요 분야, 교육 주기, 교육 주관
정보보호 인식 및 예산	정보보호 이행 여부,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변화 분야, 정보보호 관련 예산 지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홈페이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장치, 업무용 PC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용 PC 관리, 업무전산시스템 사용 PC 관리, 이용자 개인정보 서류 관리방법, 기관 출입 통제, 연계의뢰서 절차 및 규정
개인정보파기	개인정보 파기처리 여부, 파기처리 방법, 파기 기기나 시설, 교체 PC 하드디스크 처리, 기타 의견
복지관 정보	지역, 컴퓨터 사용환경, 전산시스템 사용여부

설문조사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2009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159개 장애인복지관을 대

상으로 실시하여 이중 86개 기관(54.9%)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응답 방법으로는 이메일 72개소(83.72%), 우편 11개소(12.79%), 팩스 3개소(3.49%)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분석은 수량적 자료를 제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응답기관 일반 현황

설문조사는 총 86개 기관이 응답하여 전체 장애인복지관 159개소 대비 54.9%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중 서울지역은 22개소, 경기 10개소, 전북 8개소, 충북과 경남이 각각 5개소, 부산·강원·충남·전남·대구 각각 4개소, 인천 3개소, 제주 2개소, 광주·대전·울산 각각 1개소가 응답하여 전 지역에서 회수되었다.

전체 복지관의 전산 인프라 환경을 보면 평균 보유 PC는 업무용 PC가 평균 36.4대이며, 이중 업무전산시스템이 설치되어 사용되는 PC는 25.9대로 나타났다. 서버는 94.8%(n=73)가 보급되어 있었는데, 이는 업무전산시스템의 기능보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별도의 공간 보관, 관리는 75.0%(n=54)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한 보관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선공유기는 미사용 기관이 62.3%(n=43)로 사용기관 37.7%(n=2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복지관업무전산시스템은 96.5%(n=83) 기관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난 2007년도 업무전산 활용실태 조사 90.1%(n=100)에 비하여 사용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계관리가 89.2%(n=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사관리 84.3%(n=70)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서관리 49.4%(n=41), 연구개발 45.8%(n=38)가 가장 낮게 나타나 해당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 2.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현황

장애인복지관 52.3%(n=45)가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향후 12개월 이내 마련 계획이 있는 기관은 37.2%(n=32)로 일반기업 33.4%<sup>1</sup>에 비해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문서화된 지침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높았다. 보호지침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은 [표 7]과 같이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93.3%(n=42)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목적 86.7%(n=39), 개인정보 수집시 조치사항 84.4%(n=38)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에 대비와 대응, 복구 대책 지침은 33.3%(n=1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내용에 있어서 체계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표 6. 개인정보보호 지침 보유 여부

구 분	빈도 (개소)	백분율(%)
있 다	45	52.3
없으나, 향후 12개월내 마련	32	37.2
없으며, 향후 12개월내 계획없음	6	7.0
기타	3	3.5
계	86	100.0

표 7. 개인정보보호 지침 포함 내용

구 분	빈도 (개소)	백분율(%)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목적	39	86.7
개인정보 관리체계	34	75.6
개인정보 수집시 조치사항	38	84.4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42	93.3
개인정보 분류, 접근 권한 통제지침	30	66.7
정보제공자 권리	34	75.6
개인정보 침해 대비 대응, 복구대책	15	33.3
기 타	0	0.0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있는 기관 45개소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PC 보안을 위한 PC 사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정보보호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58.2%(n=50)가 수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PC 활용 능력에 차이가 많은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이용수칙 수립과 운영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칙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표 8]과 같이 중요 자료에 대한 백업 96.6%(n=28), 바이러스 감지 및 복구 백신 설치 93.1%(n=27), 방화벽 설치 86.2%(n=25) 순으로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8), 정보보호 실태조사.

나타났으며, 파일공유 비밀번호 설정이 58.6%(n=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파일공유 비밀번호 설정은 기관 내부의 PC네트워크가 업무용, 이용자용, 교육용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와 무선랜 환경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표 8. PC 정보보호 이용수칙 포함 내용

구 분	빈도 (개소)	백분율(%)
부팅 및 화면보호 비밀번호 설정	23	79.3
바이러스 감지 및 복구 백신설치	27	93.1
PC용 방화벽 설치	25	86.2
파일공유 비밀번호 설정	17	58.6
주요문서 비밀번호 설정	22	75.9
중요 자료 백업	28	96.6
서비스팩 및 최신 패치 설치	22	75.9
기타	0	0.0

PC 정보 보호 이용수칙 보유 기관 29 개소 분석

### 3.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응답기관의 평균 직원수는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전산 시스템 사용자 수는 95.3%(n=82)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산업무 담당 직원은 평균 1.2명으로 나타났으나, 겸직 전산담당 직원이 75.6%(n=65)로 전담 직원 36.0%(n=3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10.5%(n=9)만 존재하고 있었으며, 37.2%(n=32)는 겸직으로 충당하고 있어 전담인력의 배정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외부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는 3.5%(n=3)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보보호 업무를 위한 인력이 운영되는 기관에서는 모든 팀(부서) 관리·책임제와 겸직 직원을 활용하는 비율이 각각 32.5%(n=13)로 동일하였으며, 담당 팀(부서) 배정은 10.0%(n=4)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자칫 책임성과 역할이 모호해질 우려를 안고 있다.

정보보호 책임자로는 개인보호 또는 보안 담당 팀장이 33.3%(n=13), 기관장 30.8%(n=12), 개별 팀(부서)장이 23.1%(n=9), 기타 12.8%(n=5)로 조사되었다.

### 4. 정보보호 교육

장애인복지관 1.2%(n=1) 기관만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43.0%(n=37)는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미실시 기관이 46.5%(n=40)나 있어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함께 교육 콘텐츠 보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을 실시한 기관 44 개소 중 85.7%(n=36)는 일반직원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식과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7.6%(n=20)는 팀장급 대상의 정보보호 인식 및 관리 교육을, 42.9%(n=18)는 전산업무 담당자와 정보화 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비정규 인력(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실습생, 직장체험연수생 등)에 대해서는 37.8%(n=17)가 실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들 기관은 [표 10]과 같이 자체 교육 68.2%(n=30), 문서 배포 교육 36.4%(n=16), 이메일과 홈페이지 공지 13.6%(n=6)로 소극적 형태의 교육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한 상태이다.

표 9.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구 분	빈도(개소)	백분율(%)
정기적 실시	1	1.2
비정기적 실시	37	43.0
이슈발생시 실시	7	8.1
미실시	40	46.5
기타	1	1.2
계	86	100.0

표 10. 정보보호 교육 실시 방법

구 분	빈도 (개소)	백분율 (%)	유효백분율 (%)	미응답 (개소)
자체교육	30	66.7	68.2	1
외부기관 위탁	2	4.4	4.5	1
문서작성 배포	16	35.6	36.4	1
email, 홈페이지 등 공지	6	13.3	13.6	1

PC 정보 보호 이용수칙 보유 기관 45 개소 분석

응답기관 95.3%(n=82)는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순위로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과 기초교육이 50.0%(n=40), 관

리자(관장, 사무국장) 대상의 정보보호 인식 및 관리교육 20.0%(n=16), 정보보호 및 전산 담당 등 실무 교육 17.5%(n=14)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중간관리자 인식 및 관리교육이 41.8%(n=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과 기초교육이 가장 높았으며, 중간관리자 인식 및 관리교육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교육 실시 주기로는 반기 1회가 51.9%(n=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년1회가 38.3%(n=31), 분기 1회 7.4%(n=6) 순으로 나타났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응답 기관 중 57.8%(n=48)가 이용자 초기 면접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유나 사용 목적에 대해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42.2%(n=35) 기관이 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지침 보유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11. 초기면접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구 분	빈도(개소)	백분율(%)	유효백분율(%)
받는다	48	55.8	57.8
받지 않는다	35	40.7	42.2
무응답	3	3.5	
계	86	100.0	100.0

홈페이지 운영에서는 83.5%(n=71)가 로그인을 위한 회원 가입 또는 자원봉사 및 후원 신청 등을 위하여 개인 신상에 대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입력받고 있었다. 이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66개 기관 중 67.6%(n=48)가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이유로는(중복응답) 43.5%(n=30)가 회원실명제를 위해 받는다고 하였으며, 중복가입방지 24.6%(n=17), 주민등록번호 이외 마땅한 개인 신상 확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10.1%(n=7), 의례적 관례 11.6%(n=8) 순으로 나타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실명제와 중복가입 방지를 막고자 입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가 정보제공과 자원봉사나 후원자 신청을 받는 비교적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측면을 볼

때 과도한 개인정보 입력 요구로 보인다. 최소한의 식별 정보만 입력받거나, i-Pin 방식 등 대체 수단 도입을 통하여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과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표 12.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유(빈도기준)

구 분	빈도(개소)	백분율(%)
회원실명제	30	43.5
중복가입방지	17	24.6
다른 대체 방법이 없어서	7	10.1
제작업체 권유	3	4.3
의례적 관례	8	11.6
기 타	4	5.8
계	69	100.0

한편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장치 사용으로 방화벽 48.8%(n=42), 서버용 백신, 비상복구계획수립이 각각 50.0%(n=43)로 동일하며, VPN(가상사설망) 23.3%(n=20)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보안서버(SSL) 인증서 7%(n=6)와 i-Pin 사용 0.0%(n=0)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전무한 실정이었다. 방화벽과 백신, VPN은 이미 업무전산 시스템과 관련하여 기능보강으로 보급된 것으로 향후 보안서버(SSL)와 i-Pin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13.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실시 현황

구 분	빈도(개소)	백분율(%)
보안서버 인증서	6	3.7
방화벽	42	25.8
VPN(가상사설망)	20	12.3
서버용 백신	43	26.4
i-Pin	0	0.0
비상복구계획수립	43	26.4
기타	9	5.5
계	163	100.0

95.3%(n=82)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은 업무용 PC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작성, 관리(출석부, 명부 등)를 하고 있었으며, 단 4.7%(n=4)만이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해당 기관들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로는 주로 엑



셀 89.0%(n=73), 한글 41.6%(n=57), 엑세스 3.6%(n=5), 기타 1.5%(n=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원 개별로 사용하는 업무용 PC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관리는 직원들의 사용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자칫 소홀히 다루었을 때 외부 유출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의 관리 현황을 5점 척도를 활용하여 환산한 결과 바이러스 감지 및 복구 백신 설치가 4.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팩 및 최신 패치 설치 3.93, 중요 자료에 대한 백업 3.91점, PC용 방화벽 설치 3.68점, 부팅 및 화면보호 비밀번호 설정 3.35점, 주요 문서 비밀번호 설정 2.85점, 파일 공유 비밀번호 설정 2.71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 업무용 PC 관리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직원을 상대로 PC관리 교육과 사용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

표 14. 업무용 PC 관리 현황

구 분	점수
백신설치	4.77
서비스팩 및 최신패치설치	3.93
중요자료 백업	3.91
PC용 방화벽 설치	3.68
비밀번호설정	3.35
주요문서 비밀번호설정	2.85
파일공유 비밀번호설정	2.71

복지관 업무전산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관련하여 82.6%(n=71)가 직원별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아이디별 권한부여를 공식 문서화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서버 PC의 주기적 관리 체계 75.6%(n=65), 사용자 정보 보안 교육 61.6%(n=53)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이용자 정보를 다량으로 사용할 경우 결재 여부(출력 및 엑셀 변환시) 26.7%(n=23), 사용 직원의 비밀번호 주기적 교체 30.2%(n=26), 이용자 정보 출력시 워터마크 사용 8.1%(n=7)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앞으로 이용자 정보의 다량 사용에 대한 제어와 비밀번호의 주기적 교체 등 업무전산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 15. 업무전산시스템 관련 개인정보보호 현황

구 분	빈도 (개소)	백분율 (%)
직원별 접근권한부여 문서화	71	82.6
업무전산 사용자정보보안교육	53	61.6
이용자 정보 다량 사용결재	23	26.7
직원사용 비밀번호 주기적 교체	26	30.2
서버PC 주기적 관리체계	65	75.6
이용자정보출력 워터마크	7	7.1

(백분율 : 응답 86개소 기준, 복수응답)

출력되었거나 문서화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일 보관에 있어서 73.3%(n=63)는 별도 잠금장치를 통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잠금장치가 없이 보관하는 경우는 26.7%(n=23)로 조사되었다. 이중 별도 잠금장치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63개 기관은 사물함 34.9%(n=22), 별도 장소(문서고) 30.2%(n=19), 담당 직원별로 잠금 장치된 서랍에 보관 22.2%(n=14)순으로 보관하고 있어 별도 보관 장소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복지관 신축 규정에 보안실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관의 출입통제 잠금장치에 대한 조사는 보안을 위한 2~3종의 안전잠금 장치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순위로는 사무실 잠금장치와 보안경비 업체 위탁관리 기관이 각각 87.2%(n=75), 전산실 잠금장치 68.6%(n=59), 기관 입출입 잠금장치 운영(스마트카드, 생체인식 등) 52.3%(n=45), CCTV 등 감시카메라 설치와 야간경비근무가 각각 44.2%(n=38), 주간경비근무 37.2%(n=32) 순으로 나타났다. 보안을 위한 안전잠금 장치는 앞으로 첨단 디지털 도입이 필요하며, 생체인식 방법에 의한 방법 등은 출입에 대한 기록이 남아 예방적과 문제 발생시 신속한 사후처리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외부 기관 연계와 의뢰시 정보공개수준, 연계 권한 및 절차, 이용자 동의 등에 대한 내부 기준과 규정 존재 여부에서는 51.8%(n=43)만 있었으며, 48.2%(n=40)는 별도의 기준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사례 관리와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측면을 볼 때 해당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6. 출입통제 잠금장치 운영상황(실시여부)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보안경비업체 위탁관리	75	87.2
기관 입출입 잠금장치	45	52.3
사무실 잠금장치	75	87.2
전산실 잠금장치	59	68.6
cctv,감시카메라	38	44.2
주간경비근무	32	37.2
야간경비근무	39	45.3

(백분율 : 응답 86개소 기준, 복수응답)

### 6. 개인정보 파기

98.8%(n=85)의 기관들은 출력하여 사용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이 종료된 후에 분쇄 또는 소각 등으로 파기처리를 하고 있었다. 시기로는 목적 종료 후 즉각적으로 분쇄 또는 소각하는 비율이 78.8%(n=67)로 가장 높았으며, 일정 기간 후 일괄 수집 분쇄 또는 소각이 15.3%(n=13), 기타 5.9%(n=5)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신속한 파기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파기방법으로는 세단기가 96.5%(n=8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평균 보유 대수는 1.47대로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이 2개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단기의 추가 비치가 필요하다.

노후 되어 교체되는 PC의 하드디스크 처리에 있어서 45.3%(n=39)는 1회 이상 포맷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34.9%(n=30)는 특별한 관리기준이 없이 교체되거나 폐기 되고 있었다. 하드디스크 삭제 전용 프로그램 또는 장비를 이용한 포맷 5.8%(n=5), 물리적 충격을 가해 파괴 4.7%(n=4) 순으로 나타나 별도의 관리 기준과 함께 하드디스크 삭제 전용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하다.

표 17. PC하드디스크 처리방법

	빈도(개소)	백분율(%)
포맷 (1회 이상)	39	45.3
전용프로그램, 장비이용 포맷	5	5.8
물리적충격, 파괴	4	4.7
관리기준 없음	30	34.9
기타	8	9.3
계	86	100.0

### V. 개선 방안

조사된 실태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정책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문서화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무적인 것은 52.3%의 장애인복지관이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지침을 문서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2개월 이내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까지 포함하면 89.5%의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보유하게 된다. 해당 지침은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저장 및 관리하고, 그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며, 수집 목적이 달성되어 보유 기간이 종료되면 파기하는 과정을 말하며 모형은 [그림 1]과 같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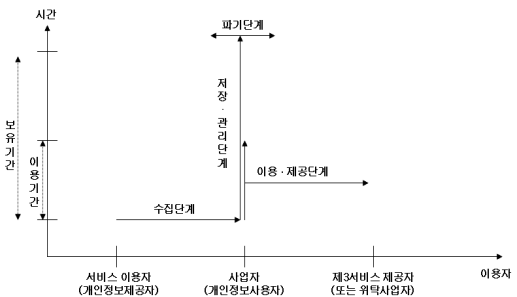


그림 1. 개인정보의 생명주기

둘째, 업무용 PC의 보안을 위한 이용수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사된 기관 58.1%가 이에 대한 수칙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C 보안을 위해서는 비밀번호와 백신, 방화벽 설치가 필요하며, 중요자료에 대한 백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백업에 대한 측면은 보다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인력 배정과 명확한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정보보호 업무 전담 직원이 있는 경우는 10.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33.3%가 모든 팀(부서)별 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어 책임성이 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보보호 업무를 책임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정해야 될 것이다.

넷째,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현재 정기적으로 정보보호 교육이 실시되는 기관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며, 미실시한 기관이 46.5%에 달하고 있다.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85.7%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인식 및 기초 교육에 치중해 있는 실정이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문서(36.4%)나 이메일, 홈페이지(13.6%)를 통한 배포와 공지가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68.2%는 내부 직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자체 교육을 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95.3%의 기관이 정보보호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교육에 대한 인식은 모두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정 비율의 예산 배정과 지출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기관의 관련 예산 지출은 업무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능보강비용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 지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을 위해서는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책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전히 39.2%의 기관이 초기 면접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홈페이지 운영 측면에서는 83.5%의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중 67.6%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며, 대다수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기능이 단순 정보제공과 자원봉사 및 후원 신청을 받는 것임을 볼 때 관리 담당 직원이 좀 더 노력한다면 불필요한 개인 정보수집은 없어도 될 것이다. 만일 꼭 필요하다면 i-pin이나 다른 대체 수단 사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업무용 개인 PC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명부 작성, 관리를 최소화 되어야 한다. PC 관리에 있어서는 비밀번호 설정

과 방화벽 설치, 정기적인 자료 백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전달인력의 관리 감독, 직원 교육이 함께 맞물릴 때 원활하게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전산시스템 사용과 관련해서는 82.6%의 기관이 직원별 접근 권한 부여를 문서화 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다. 다만 업무전산시스템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다량으로 변환하거나 추출과 주기적인 비밀번호 교체, 이용자 정보 출력시 워터마크 인쇄는 앞으로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출력된 개인정보 문서는 별도의 안전한 곳의 보관이 원칙이나 여전히 시설 공간의 한계로 73.3%의 기관이 직원의 서랍이나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신축되는 장애인복지관은 개인정보 문서와 서버 보관을 위한 별도의 보안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사용 목적이 종료된 문서에 대한 즉각적이고 정확한 개인정보 파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에서 더 흔히 일어나며, 의도적인 것보다 인식과 관리 부족에서 기인된다. 98.8%의 기관이 파기 처리를 하고 있어 다소 안심이 되지만 즉각적인 문서 파기를 위해서는 문서세단기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교체 PC의 하드디스크는 하드디스크 삭제 전용 프로그램 또는 장비를 이용한 포맷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확실한 데이터 삭제가 요구된다.

## VI. 결론

장애인복지관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 상 모든 업무와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부터 시작하고 끝을 맺게 된다. 수집 정보는 생육사·건강·일상생활·직업 등 광범위하고 세밀하기에 이용 장애인의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용 장애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업무전산시스템 도입이 개인정보 문제를 키웠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전 수기 방식을 사용하던 시기에도 개인정보의

관리와 사용, 보관 등에 대한 규정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 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관에서 빈번하게 만드는 홍보용 동영상이나 관보 등 출판 발간물과 후원과 관련한 사례소개 등에서 빈번한 마찰과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복지관 내에 설치되는 CCTV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보다 체계적인 대책마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복지 분야에서는 전혀 제기되고 있지 않았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거시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연구가 처음이고, 복지 분야에서 선행 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세부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업무전산시스템 측면에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전산 관련 학계와 연계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시스템 보안과 사용자의 보안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기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는 발생 이후 어떠한 사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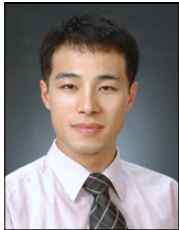
- [1] 강영숙, “정보화가 사회복지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연세 사회복지 연구, 제9호, 2003.
- [2] 강창구,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립, 저장 및 관리, 이용, 제공, 파기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모델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pp.9-19, 2006.
- [3] 남기효 외 5인, “개인정보보호기술의 최신 동향과 향후 전망”, 정보보호학회지, 제18권, 제6호, 2008.
- [4] 남현수, 개인정보보호의 공법적 실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5] 김민섭, 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6] 김영환,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情報電子技術論叢, 제1권, 2002.
- [7] 김태현, 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8] 김혜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2007.
- [9] 김철진, “사회복지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검토”,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1권, 제1호, 2007.
- [10] 박균성, 박원일, “우리나라 個人情報保護法制의改善方案”, 慶熙法學, 제36권, 제2호, 2001.
- [11] 박준범,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12] 신영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제4권, 제1호, 2007.
- [13] \_\_\_\_\_,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수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16권, 제1호, 2009.
- [14] 신희선, 초등학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분석,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5] 안세환, 클라이언트/서버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6] 양성준, 초등학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대한 실태분석,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7] 이민영,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편논의와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 제16권, 제1호, 2004.
- [18] 이춘상, 디지털 개인정보의 보호기술과 효과적 인 활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19] 윤영민, “사회복지서비스와 정보화”, 한국사회복지학, 제30권, 1996.
- [20] 진승아, 교육환경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략,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1] 조윤희, 박재용, 정보사회론, 신지원, p.11, 2006.
- [22] 최성모, 정보사회의 정보화 정책, 나남출판, p.226, 1998.

- [23] 최월미,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24] 최재혁, 형사법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25] 최정열, 인터넷과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정보법학회 제6차 학술심포지엄, 2007.
- [26] 홍준형 외,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를 위한 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p.16, 52-53, 2004.
- [27]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정립을 위한 관련 법 정비 연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p.34, 2008.
- [28] www.asiatoday.co.kr 2009. 6. 18 “보이스 피싱의 온상 대책 없는 대한민국

#### 저 자 소 개

김 성 진(Sung-Jin Kim)

정회원



- 2005년 8월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석사)
- 2009년 3월 ~ 현재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박사과정)
- 2007년 4월~현재 :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 2010년 9월~현재 :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직업재활, 정보화

권 재 숙(Jae-Sook Kweon)

정회원



- 2004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교육석사)
- 2006년 5월 ~ 현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평가사 재직 중
- 2009년 2월 ~ 현재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직업재활, 노인복지